

## 2006년도 풍수해보험 운영사례



송 호 열 ▶▶

소방방재청 재해보험팀 서기관  
hysong88@nema.go.kr

수해보험 시범사업 운영약정을 체결하면서 풍수해보험 사업이 시작되었다.

본 내용에서는 금년도 도입된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개요와 추진실적 및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90년대부터 도입을 검토한 풍수해보험제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복구지원에 소요되는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피해 주민들의 복구비 무상지원요구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서 이를 대체·보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자연재해보험 도입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90년부터 「자연재해보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 통계자료부족과 자연재해의 특성상 위험부담으로 인한 손실발생 우려와 민원 발생 소지로 민간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 '04년 6월 소방방재청 발족을 계기로 민간보험사와 소방방재청 및 보험개발원이 참여하는 민·관·연 합동 T/F팀 구성하여 보험도입을 위한 기초작업을 재개하였으며, 금년 3월 3일 「풍수해보험법」이 법률 제7859호로 제정·공포되고, 5월 16일 소방방재청과 동부화재(주)가 전국 9개 시·군에 대한 풍

### 2. 풍수해보험제도의 운영개요

#### 2.1 개요 및 대상재해

풍수해보험은 지난 5월 16일부터 경기도 이천시 등 9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이 총괄 주관하되 민간보험회사인 동부화재(주)와 약정을 체결하여 보험판매, 손해평가, 자금관리 등을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대상재해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하고 있다.

#### 2.2. 보험 대상

풍수해보험은 현재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를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현행 사유재산 복구지원제도의 대상종목(약 200여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3 보험가입자 지원

보험가입 촉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의 49~65%를 보조하고 있다.

표 1. 보험가입자 지원 구조

구 분	총보혐료		비 고
	위험보혐료	부가보혐료	
기본가입 <sup>1)</sup>	50%(국고+지방비)	100%(국고)	총보혐료중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추가가입 <sup>2)</sup>	-	100%(국고)	49~65% 지원

1) 기본가입 : 보험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최소가입금액 한도(복구비 기준액의 50%)

2) 추가가입 : 보험가입자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가입금액

### 2.4 행정기관의 협력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인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주로 농촌지역에 있는 반면, 민간보험사 영업조직이 농촌지역까지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민원실에 판매부스를 설치, 홍보 및 보험가입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아래 사진).



### 2.5 손해평가인 제도 도입

자연재난의 특성상 재난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기존의 손해사정사만으로는 손해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주민 등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최종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2.6 기초통계자료 DB 구축 등

향후, 보험사업의 확대 및 풍수해예방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 발생이력 및 향후 발생위험 등을 고려한 풍수해보험관리지도 및 기초통계자료 관리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 2.7 현행 피해 복구지원제도와와의 관계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료 보조를 통해 국비 등이 지원되었으므로 추가로 무상복구지원을 하지 않으며, 향후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현행 복구지원제도의 무상지원금을 점진적인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 3. '06년도 풍수해보험 추진실적

### 3.1 추진개요

풍수해보험은 지난 10여 년간의 연구·검토를 통해 기초통계자료를 축척하고 도입방안을 연구검토한 제도이지만, 향후 본 사업추진 시 시행과정 중에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업기간 : '06.5월~'07.12월(시범사업)
- 사업비 : 38.2억원(국비 33.3, 지방비 4.9)  
※ '06년 예산 : 19.0억원(국비 16.7, 지방비 2.3)
- 사업지역 : 도별 1개씩 총 9개 시·군  
※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전남 곡성, 경북 예천,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 사업자 : 동부화재보험(주)
- 보험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49~65%를 국비 및 지방비로 보조

- 시범지역 추가 : 8개소('06.10. 2)
- ※ 경기 평택, 강원 평창, 충북 단양, 충남 당진, 전북 임실, 전남 여수, 경북 봉화, 경남 남해

- 택 2, 비닐하우스 1) 지급
- 경북 예천 단독주택 2동 : 1,500만원(전파), 750만원(반파)
- 경남 창녕 비닐하우스 : 손해방지비용 20만원

3.2 가입실적(10.27일 기준)

- 가입실적 : 3,874건/1.26% (주택 3,776건, 온실 46건, 축사 52건)

3.3 보험금 지급사례

금년 7월 태풍 '에위니아' 피해발생으로 총 3건(주

3.4 풍수해보험 캐릭터 '새별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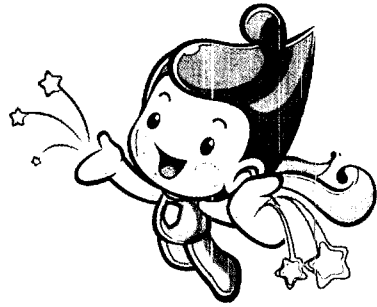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 이미지를 형상화함으로써 풍수해보험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필요성을 전달하는 이미지 효과 제고(다음 페이지 참조).

표 2. '06년도 풍수해보험 운영현황

보험 가입자		시설물(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의 소유자			
가입 방법		임의보험 (자율적인 보험가입)			
보험 기간		1년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마지막 날 오후 24시)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보통 약관	대상 시설물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비율별 보상금액		
			50% 보험가입금액	70% 보험가입금액	90% 보험가입금액
	주택	전 파	3천만 원×50% =1,500만원	3천만 원×70% =2,100만원	3천만 원×90% =2,700만원
		반 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 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침 수	80만원100만원120만원		
	온실 축사	이·개축 희망 시 (반파, 침수)	1,080만원	1,260만원	1,440만원
		전 파	기준단가×50% ×총 피해면적	기준단가×70% ×총 피해면적	기준단가×90% ×총 피해면적
		반 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 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특별 약관	하천고수부지 내에 온실의 대설만 담보		하천 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은 대설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축산분뇨처리건물 담보		축사에 부속되어 있는 분뇨처리건물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축사와 동일함		
	보험료 분할납입		보험기간이 1년이며,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에 대해 4회 분납, 12회 분납 가능		
추가 비용	온실의 잔존물제거비용		풍수해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심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0만원을 한도로 지급)		

- 자연을 다스리는 요정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심어주는 보험의 이미지 표현 -

- 머리와 몸은 자연의 푸른 들과 산을 상징
- 머물러는 물·바다·강을 상징
- 손에서 나오는 별은 새로운 희망을 상징
- 가슴에 소방방재청 마크 삽입



#### 4. 중수해보험 가입성향 분석 및 제도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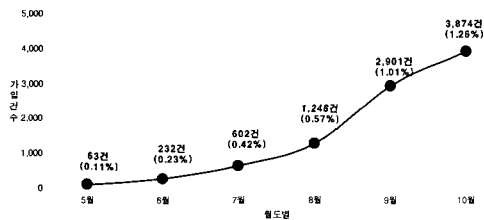
가입건수는 답보상태임

##### 4.1 가입성향 분석결과

###### 4.1.1 보험가입 추이('06. 5월 ~ 10월까지)

보험가입추이는 6월말 23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7월 태풍피해 시 첫 보험금수령자 발생이후 급격히 늘어나 8월말에는 2배 이상인 1,248건으로, 10월27일 기준 3,874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표 3. 월별 보험가입 추이



###### 4.1.2 보험대상별 가입현황

'06. 5.16일 판매개시 이후, 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3,776건)하고 있으나 온실(46건)과 축사(52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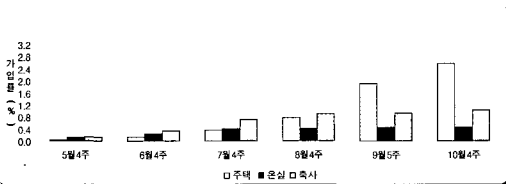


그림 2. 보험대상별 (주택, 온실, 축사) 가입현황

###### 4.1.3 지역별 가입률

시범지역별 가입률은 경기 이천시, 전남 곡성군, 경북 예천군, 경남 창녕군 순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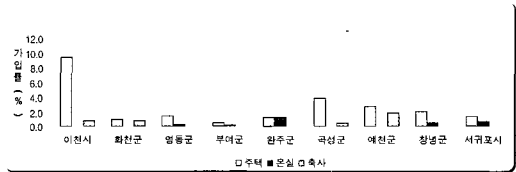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별 가입률

###### 4.1.4 주택 형태별

단독주택 가입이 대부분임 (3,776건 중 3,563건/94.4%)

공동주택  
5.6%



단독주택  
94.4%

그림 4. 주택형태별 가입현황

###### 4.1.5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규격 형태별

농촌지역의 일반적 비닐하우스 형태인 A~G형이 절반이상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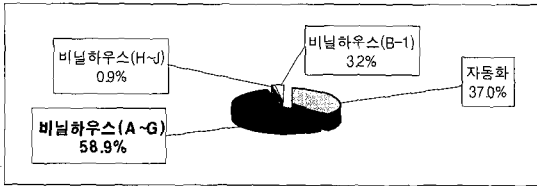


그림 5. 온실(비닐하우스) 규격별 형태별 가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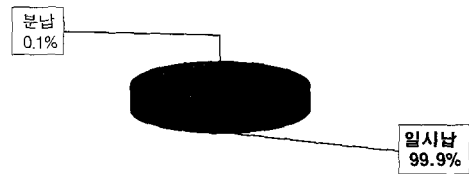


그림 8. 보험료 납입형태별 가입현황

#### 4.1.6 축사(畜舍) 규격 형태별

소(牛) 사육시설인 한육우(肉牛)사와 유우(乳牛)사가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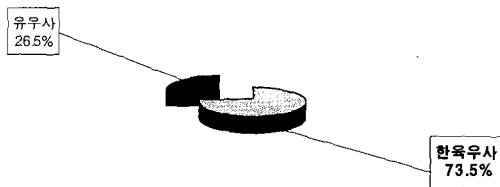


그림 6. 축사의 형태별 가입현황

#### 4.1.7 보험가입금액 형태별

3가지 유형의 보험가입 금액(50%, 70%, 90%)종류 중 기본형인 50% 위주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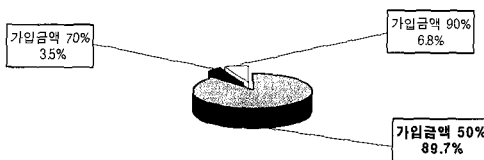


그림 7. 보험가입 금액별 가입현황

#### 4.1.8 보험료납입 형태별

자기부담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에 한해 보험료의 분할 납입을 할 수 있어 보험료가 저렴한 주택의 일시납 위주로 가입

(분할납부 비중 : 3,874건 중 5건/ 0.1%)

### 4.2 풍수해보험 제도 개선사항

#### 4.2.1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보험가입 개선

○ 법령에서 등재를 의무화하지 않은 합법주택의 보험가입가능 확대

- '62년 이전 건축된 주택 → 과세대장 또는 인 후보증으로 확인

- '99. 2. 8 ~ '06. 5. 9일까지 비도시지역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 과세대장 또는 농지전용서 등으로 확인

#### 4.2.2 시범사업 조기 확대관련 보험요율 반영

○ 보험대상시설물 추가에 따른 보험요율 반영

- 기존 시범지역 온실(4개 시군), 축사(5개 시군) 보험요율 추가

○ 시범사업지역 확대에 따른 보험요율 반영

- 추가확대 지역(8개 시군) 주택, 온실, 축사 보험요율 추가

#### 4.2.3 보험계약자 보험료납입 편의증진 및 부담 경감 등

○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신설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변경 → 12회(매월) 분납 신설

○ 소파손해부담보 특별약관 신설 → 선택 가입 시 보험료 할인

○ 보험계약 1년 이상 유지계약자 우대 및 과거 손해율에 따른 할인 및 할증 실시

## 5. 풍수해보험 도입의 기대효과

### 5.1 보험제도를 통한 재난대비로 자율적 방재체계 구축


현행 피해지원제도상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로 되어 있는 지원액을 풍수해보험 가입 시 최대 90%까지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됨으로서 피해주민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가입 기간 중 피해여부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할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자율방재의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2 민영 보험시장 활성화 기대

보험은 그 특성상 보험요율을 통한 위험관리가

사업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풍수해보험 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위험관리기법과 각종 DB집적자료 등은 향후 민간보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5.3 우리의 터전 고향지킴이의 역할

향후 풍수해보험이 정착되면 민간보험이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기능을 다할 것이며, 자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됨으로서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든든한 믿음과 버팀목이 되는 “우리의 터전 고향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본 원고는 소방방재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